

#붙임

마량천 하천기본계획(변경) 및 재해예방사업
전 략 환 경 영 향 평 가
-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-

2024. 04



전라남도

1. 개발기본계획의 개요

1.1 계획의 배경 및 목적

- 지방하천인 마량천은 2011년 하천기본계획이 최초 수립된 이후, 약 10년만에 수립되는 하천임.
- 따라서 「하천법」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하천의 유량, 수질, 생태 및 이용 현황 등 제반 사항과 하천의 관리, 이용, 보존, 개발, 치수경제 및 하천환경에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·분석하여, 그 결과에 맞게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수자원종합개발 지침으로 활용하고자 함.

1.2 전략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

가. 전략환경영향평가

- 본 계획은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됨.

<표 1.2 - 1>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

구 분	개발기본계획의 종류	협의 요청시기
2. 개발기본계획 자. 하천의 이용 및 개발	1) 「하천법」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	○ 「하천법」 제25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리청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

나. 소규모환경영향평가

- 본 계획은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[별표4]에 따라 하천구역내 10,000㎡이상 시행예정인 재해예방(하천공사)사업으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됨.
-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시행령 제60조제3항에 의거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세부항목을 검토하여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별도 협의 절차를 생략함.

<표 1.2 - 2>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

구 분	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·규모	협의 요청시기
7. 「수도법」, 「하천법」, 「소하천정비법」 및 「지하수법」 적용지역	나. 「하천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10,000제곱미터 이상인 것	○ 사업의 승인 등 전

1.3 계획의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

- 2011. 07. 05 : 마량천 하천기본계획 최초수립
- 2023. 07. 10 : 마량천 하천기본계획(변경)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착수
- 2023. 11. 21 ~ 12. 08 :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
- 2024. 02. 16: 전략환경영향평가(초안) 협의요청
- 2024. 02. 22~ 04. 04 : 전략환경영향평가(초안) 공고·공람 및 주민 등의 의견수렴
- 2024. 03. 08: 전략환경영향평가(초안) 주민설명회 개최
- 2024. 07. : 전략환경영향평가(본안) 협의요청

1.4 계획의 내용

1.4.1 계획의 내용

가. 계 획 명 : 마량천 하천기본계획(변경) 및 하천재해예방사업

나. 계 획 위 치 : 전라남도 강진군 마량면 마량리 280번지 일원

다. 계 획 연 장 : 3.65km

라. 계획시행자 : 전라남도

마. 계획승인기관 : 전라남도

바. 계 획 내 용

1) 계획하천 구간

가) 하천기본계획 수립현황

<표 1.4 - 1> 마량천 하천기본계획 수립현황

하천명	하천 코드	하천지정 근거	기본계획 고시년도	등급	계 획 명	시행자
마량천	4121130	전남453호 (2003.12.27)	2011.07.05	지방	마량천·당암천 하천기본계획 마량천 L=4.37km, 당암천 L=4.80km	전라남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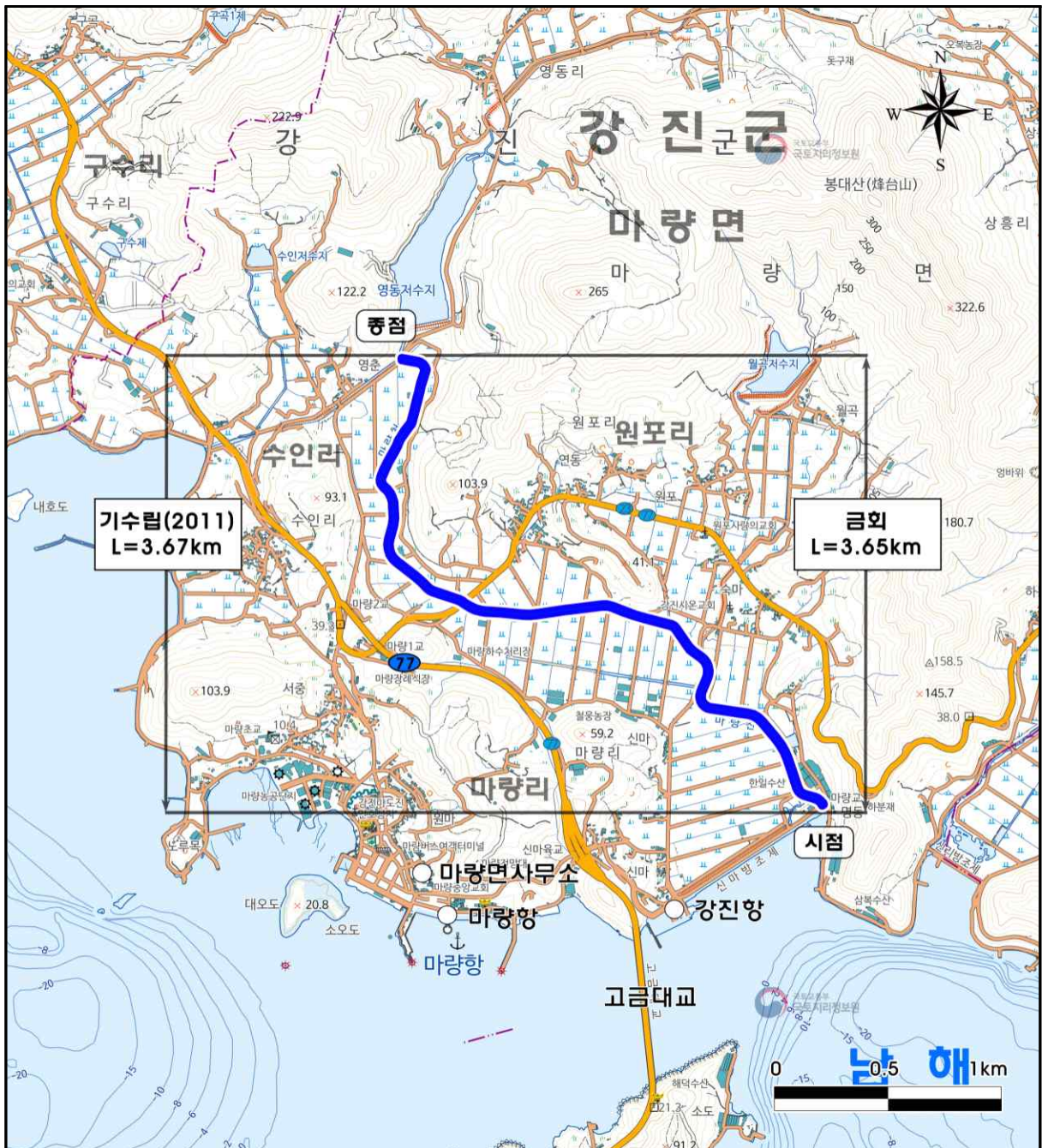
나) 계획하천 구간 검토

- 현장조사 및 현황, 종·횡단 측량 성과 등을 검토한 결과 유로 및 시·중점의 변화는 없으나, 기수립의 연장이 과다 결정됨에 따라 금회 측량 성과를 이용하여 하천연장을 재조정하였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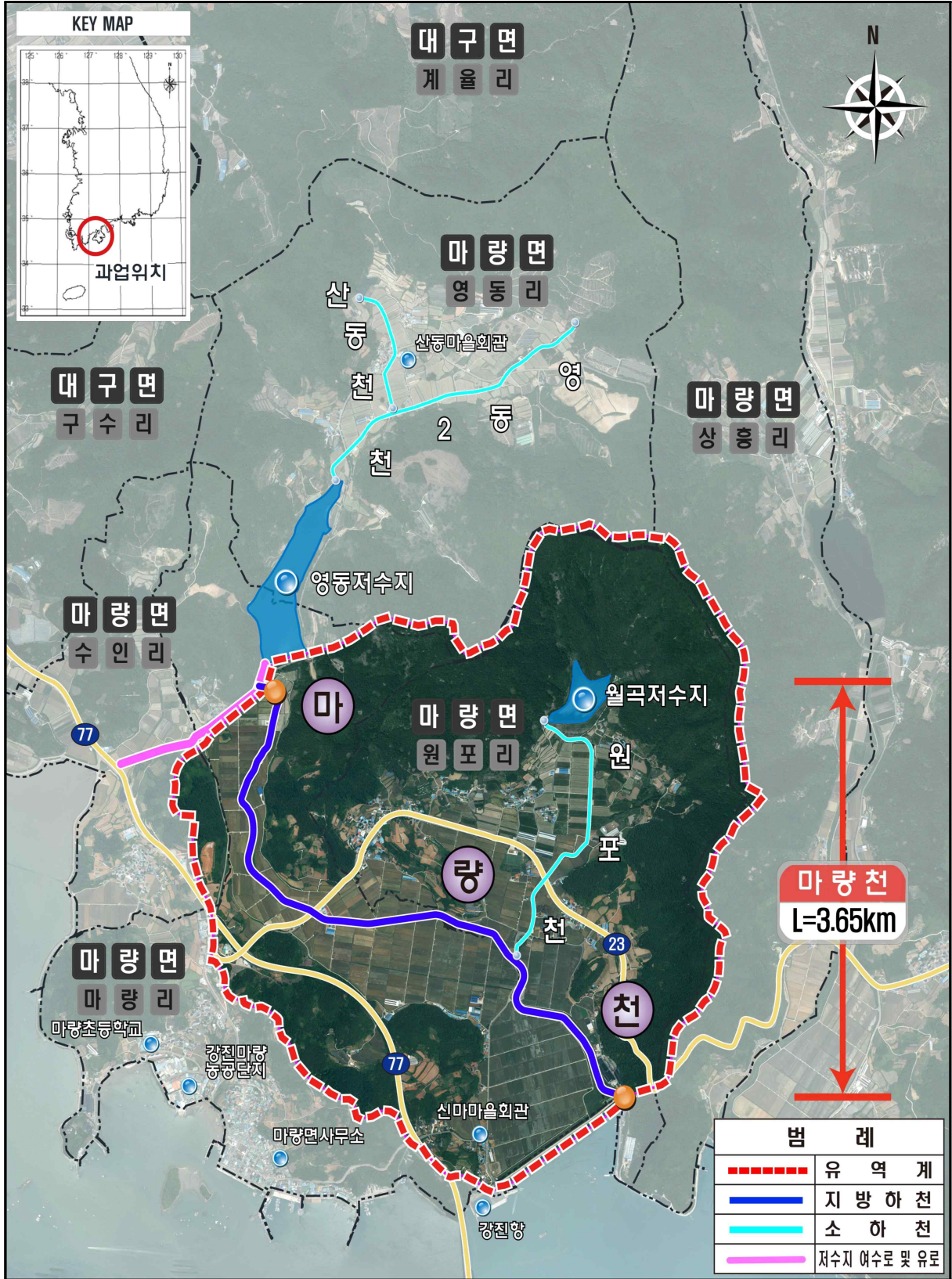
<표 1.4 - 2> 하천구간 범위

하천명	등급	하천의 구간		유역 면적 (km ²)	유로 연장 (km)	하천 연장 (km)	비고
		기 점	종 점				
마랑천	기고시 지방	전남 강진군 마랑면 마랑리 280번지선	전남 강진군 마랑면 신마방조제	6.76	4.57	3.67	2011년
	금회 지방	전남 강진군 마랑면 마랑리 280번지선	전남 강진군 마랑면 신마방조제	6.76	3.65	3.65	-

주) 하천기본계획 고시 상 기점은 상류부터 시작하나 금회 계획상 표기되는 NO.는 하류부터 시작함



(그림 1.4 - 1) 위치도



(그림 1.4 - 2) 유역현황도

2. 주민 등의 의견 수렴

2.1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개요

- 본 계획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13조,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마량천 하천기본계획(변경) 및 하천재해예방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을 공람·공고하여 해당 평가 대상지역 주민 및 관계행정기관의 의견수렴을 실시함.

2.2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공고·공람

2.2.1 공고·공람

- 신문공고 : 광주일보, 동아일보
- 국방시설본부 홈페이지(<http://www.jeonnam.go.kr/>)
-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(<http://www.eiass.go.kr/>)

2.2.2 주요 공고·공람 내용

- 공람기간 : 2024. 2. 22 ~ 2024. 4. 4 (공휴일 및 토요일 공람기간 제외)
- 주민의견 제출
 - 제출기한 : 공람개시후 ~ 공람 만료일로부터 7일 이내
 - 의견제출 방법 : 해당 하천별 공람장소에 비치된 서식에 따라 담당 부서로 서면 제출
- 공람장소 및 의견제출처
 - 전남도청 자연재난과, 시·군 하천관리부서(읍·면사무소)

2.2.3 주민설명회

- 일시 : 2024년 3월 8일(금) 10:30
- 장소 : 마량면사무소
- 참석인원 : 전라남도청, 관련용역사, 마을주민
- 개최결과 : 주민설명회 질의내용에 대한 반영계획은 수록 (공청회 개최요청 없음)

전라남도 공고 제2024-206호

지방하천 하천구역·홍수관리구역 결정, 전략환경영향평가(초안) 주민 의견청취에 따른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

망월천 등 7개 지방하천 하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「하천법」 제10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하천구역·홍수관리구역 결정,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, 제15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(초안)에 대한 주민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. 2. 22.

전라남도지사

1. 계획의 개요

- 계획명 : 하천기본계획 수립(망월천 등 7개 지방하천)
- 계획하천 위치, 연장 및 주민설명회 장소

하천명	위 치	연 장 (km)	주 민 설 명 회			
			날 짜	시 간	장 소	
1	망월천	영암군 삼호읍, 미암면, 학산면	15.20	2024.03.15.(금)	10:00	학산면 행정복지센터
2	계곡천	해남군 계곡면	10.19	2024.03.15.(금)	14:00	계곡면사무소
3	춘전천	강진군 강진읍	2.07	2024.03.13.(수)	10:30	보전마을회관
4	쌍암천	순천시 송주읍	8.81	2024.03.13.(수)	15:00	송주읍 행정복지센터
5	대산천	영광군 영광읍, 법성면	2.71	2024.03.14.(목)	11:00	와룡1리 경로당
6	묘량천	영광군 묘량면, 영광읍, 대마면	8.56	2024.03.14.(목)	14:00	묘량면사무소
7	마량천	강진군 마량면	3.65	2024.03.08.(금)	10:30	마량면사무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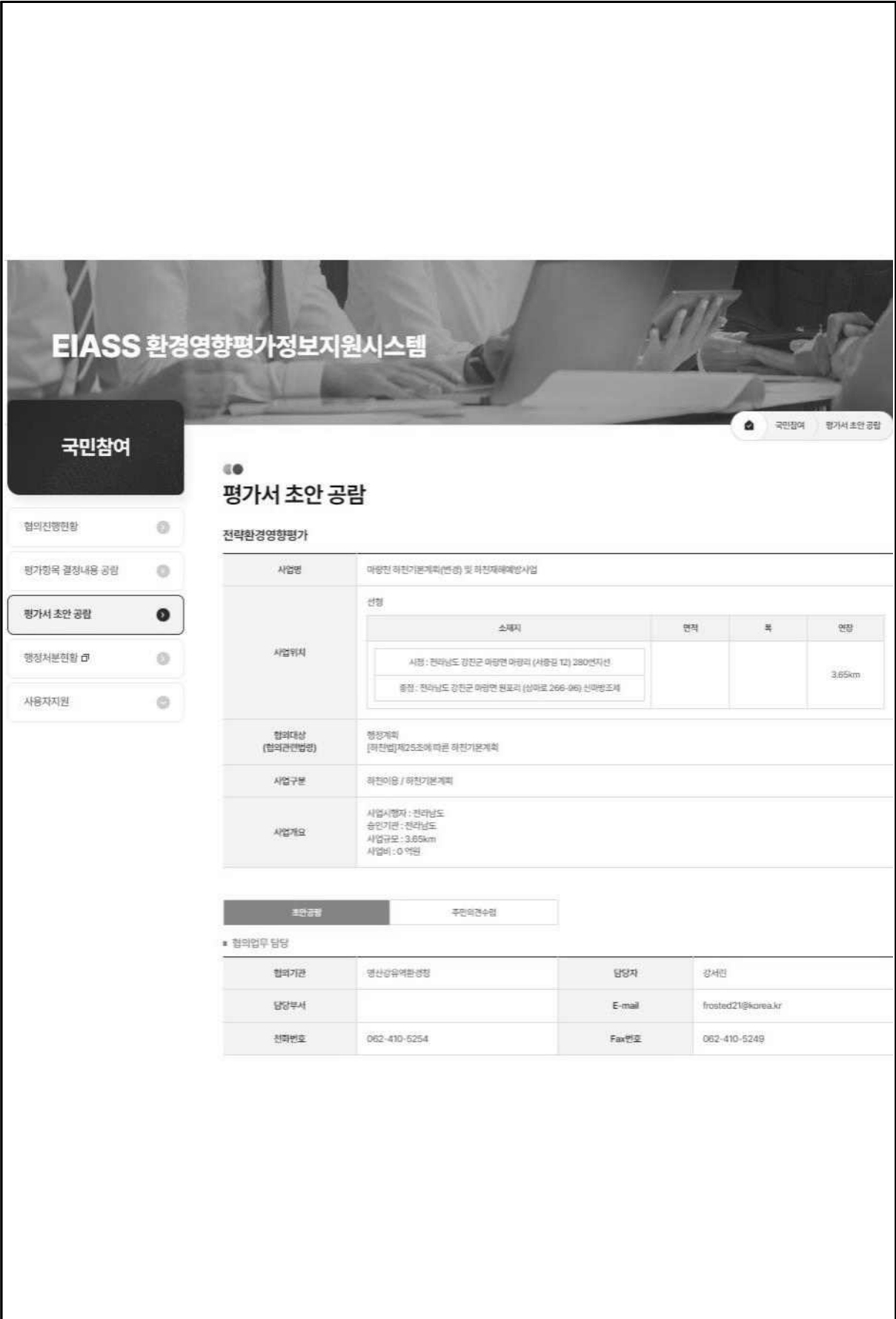
2. 공람기간 및 장소

구 분	공람기간 및 장소
공 란 기 간	2024. 2. 22. ~ 2024. 4. 4.(30일) (공휴일 및 토요일 공람기간 제외)
공 란 장 소	전남도청 자연재난과, 시·군 하천관리부서(읍·면사무소) ※ 관련 서류는 공람장소에 비치
정 보 통 신 망	전남도청 홈페이지,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(www.eiass.go.kr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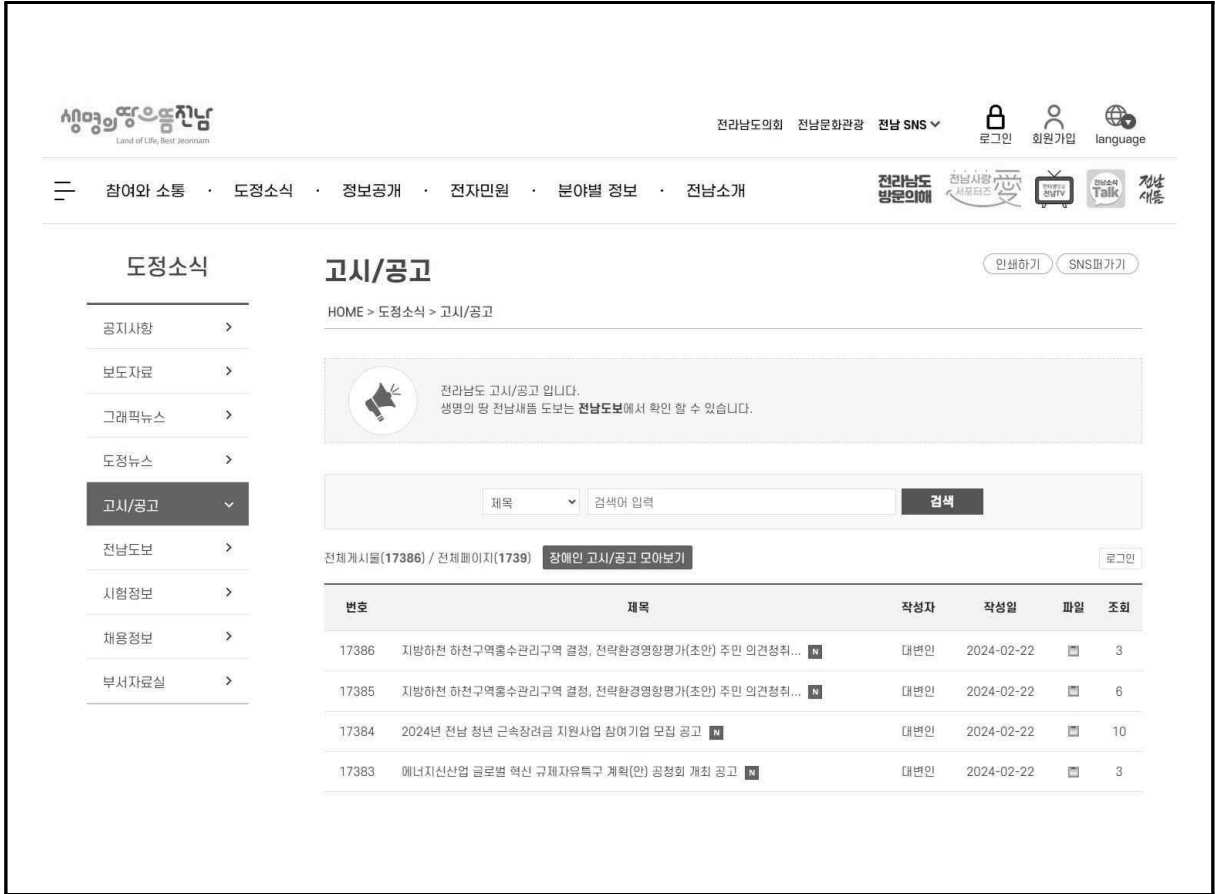
3. 주민의견 제출

- 제출내용 :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및 하천구역·홍수관리구역에 관한 의견
- 제출방법 : 해당 하천별 공람장소에 비치된 서식에 따라 담당 부서로 서면 제출
- 제출기간 : 공람개시 후 ~ 공람 만료일로부터 7일 이내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자연재난과(☎061-286-3081) 또는 시·군 하천관리 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의견이 있을 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그림 2.2 - 1) 공람·공고 정보통신망 게재(EIASS 홈페이지)



(그림 2.2 - 2) 공람·공고 정보통신망 게재(EIASS 홈페이지)



(그림 2.2 - 3) 공람·공고 정보통신망 게재(전라남도청 홈페이지)

<p>2024년 2월 22일 목요일 광주일보</p>	<p>2024년 02월 22일 A10면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전라남도 공고 제2024-206호</p> <p>지방하천 하천구역·홍수관리구역 결정 전략환경영향평가(초안) 주민 의견청취에 따른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공고</p> <p>망월천 등 7개 지방하천 하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「하천법」 제10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하천구역·홍수관리구역 결정,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, 제15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(초안)에 대한 주민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24. 2. 22. 전라남도지사</p> <p>1. 계획의 개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계획명 : 하천기본계획 수립(망월천 등 7개 지방하천) • 계획하천 위치, 연장 및 주민설명회 장소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하천명</th> <th rowspan="2">위치</th> <th rowspan="2">연장 (km)</th> <th colspan="3">주민설명회</th> </tr> <tr> <th>날짜</th> <th>시간</th> <th>장소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 망월천</td> <td>영암군 삼호읍, 미암면, 학산면</td> <td>15.20</td> <td>2024.03.15.(금)</td> <td>10:00</td> <td>학산면 행정복지센터</td> </tr> <tr> <td>2 계곡천</td> <td>해남군 계곡면</td> <td>10.19</td> <td>2024.03.15.(금)</td> <td>14:00</td> <td>계곡면사무소</td> </tr> <tr> <td>3 춘천천</td> <td>강진군 강진읍</td> <td>2.07</td> <td>2024.03.13.(수)</td> <td>10:30</td> <td>보진마을회관</td> </tr> <tr> <td>4 쌍암천</td> <td>순천시 송주읍</td> <td>8.81</td> <td>2024.03.13.(수)</td> <td>15:00</td> <td>송주읍 행정복지센터</td> </tr> <tr> <td>5 대산천</td> <td>영광군 영광읍, 법성면</td> <td>2.71</td> <td>2024.03.14.(목)</td> <td>11:00</td> <td>외동1리 경로당</td> </tr> <tr> <td>6 묘량천</td> <td>영광군 묘량면, 영광읍, 대마면</td> <td>8.56</td> <td>2024.03.14.(목)</td> <td>14:00</td> <td>묘량면사무소</td> </tr> <tr> <td>7 마량천</td> <td>강진군 마량면</td> <td>3.65</td> <td>2024.03.08.(금)</td> <td>10:30</td> <td>마량면사무소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2. 공람기간 및 장소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공람기간 및 장소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공람기간</td> <td>2024. 2. 22. ~ 2024. 4. 4.(30일)(공휴일 및 토요일 공람기간 제외)</td> </tr> <tr> <td>공람장소</td> <td>전남도청 자연재난과, 시·군 하천관리부서(읍·면사무소) ※ 관련 서류는 공람장소에 비치</td> </tr> <tr> <td>정보통신망</td> <td>전남도청 홈페이지,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(www.eiaass.go.kr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3. 주민의견 제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제출내용 :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및 하천구역·홍수관리구역에 관한 의견 • 제출방법 : 해당 하천별 공람장소에 비치된 서식에 따라 담당 부서로 서면 제출 • 제출기간 : 공람개시 후 ~ 공람 만료일로부터 7일 이내 •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자연재난과(☎061-286-3081) 또는 시·군 하천관리 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의견이 있을 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	하천명	위치	연장 (km)	주민설명회			날짜	시간	장소	1 망월천	영암군 삼호읍, 미암면, 학산면	15.20	2024.03.15.(금)	10:00	학산면 행정복지센터	2 계곡천	해남군 계곡면	10.19	2024.03.15.(금)	14:00	계곡면사무소	3 춘천천	강진군 강진읍	2.07	2024.03.13.(수)	10:30	보진마을회관	4 쌍암천	순천시 송주읍	8.81	2024.03.13.(수)	15:00	송주읍 행정복지센터	5 대산천	영광군 영광읍, 법성면	2.71	2024.03.14.(목)	11:00	외동1리 경로당	6 묘량천	영광군 묘량면, 영광읍, 대마면	8.56	2024.03.14.(목)	14:00	묘량면사무소	7 마량천	강진군 마량면	3.65	2024.03.08.(금)	10:30	마량면사무소	구분	공람기간 및 장소	공람기간	2024. 2. 22. ~ 2024. 4. 4.(30일)(공휴일 및 토요일 공람기간 제외)	공람장소	전남도청 자연재난과, 시·군 하천관리부서(읍·면사무소) ※ 관련 서류는 공람장소에 비치	정보통신망	전남도청 홈페이지,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(www.eiaass.go.kr)	<p>전라남도 공고 제2024-206호</p> <p>지방하천 하천구역·홍수관리구역 결정, 전략환경영향평가(초안) 주민 의견청취에 따른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공고</p> <p>망월천 등 7개 지방하천 하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「하천법」 제10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하천구역·홍수관리구역 결정,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, 제15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(초안)에 대한 주민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24. 2. 22. 전라남도지사</p> <p>1. 계획의 개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계획명 : 하천기본계획 수립(망월천 등 7개 지방하천) • 계획하천 위치, 연장 및 주민설명회 장소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하천명</th> <th rowspan="2">위치</th> <th rowspan="2">연장 (km)</th> <th colspan="3">주민설명회</th> </tr> <tr> <th>날짜</th> <th>시간</th> <th>장소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 망월천</td> <td>영암군 삼호읍, 미암면, 학산면</td> <td>15.20</td> <td>2024.03.15.(금)</td> <td>10:00</td> <td>학산면 행정복지센터</td> </tr> <tr> <td>2 계곡천</td> <td>해남군 계곡면</td> <td>10.19</td> <td>2024.03.15.(금)</td> <td>14:00</td> <td>계곡면사무소</td> </tr> <tr> <td>3 춘천천</td> <td>강진군 강진읍</td> <td>2.07</td> <td>2024.03.13.(수)</td> <td>10:30</td> <td>보진마을회관</td> </tr> <tr> <td>4 쌍암천</td> <td>순천시 송주읍</td> <td>8.81</td> <td>2024.03.13.(수)</td> <td>15:00</td> <td>송주읍 행정복지센터</td> </tr> <tr> <td>5 대산천</td> <td>영광군 영광읍, 법성면</td> <td>2.71</td> <td>2024.03.14.(목)</td> <td>11:00</td> <td>외동1리 경로당</td> </tr> <tr> <td>6 묘량천</td> <td>영광군 묘량면, 영광읍, 대마면</td> <td>8.56</td> <td>2024.03.14.(목)</td> <td>14:00</td> <td>묘량면사무소</td> </tr> <tr> <td>7 마량천</td> <td>강진군 마량면</td> <td>3.65</td> <td>2024.03.08.(금)</td> <td>10:30</td> <td>마량면사무소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2. 공람기간 및 장소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공람기간 및 장소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공람기간</td> <td>2024. 2. 22. ~ 2024. 4. 4.(30일)(공휴일 및 토요일 공람기간 제외)</td> </tr> <tr> <td>공람장소</td> <td>전남도청 자연재난과, 시·군 하천관리부서(읍·면사무소) ※ 관련 서류는 공람장소에 비치</td> </tr> <tr> <td>정보통신망</td> <td>전남도청 홈페이지,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(www.eiaass.go.kr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3. 주민의견 제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제출내용 :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및 하천구역·홍수관리구역에 관한 의견 • 제출방법 : 해당 하천별 공람장소에 비치된 서식에 따라 담당 부서로 서면 제출 • 제출기간 : 공람개시 후 ~ 공람 만료일로부터 7일 이내 •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자연재난과(☎061-286-3081) 또는 시·군 하천관리 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의견이 있을 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	하천명	위치	연장 (km)	주민설명회			날짜	시간	장소	1 망월천	영암군 삼호읍, 미암면, 학산면	15.20	2024.03.15.(금)	10:00	학산면 행정복지센터	2 계곡천	해남군 계곡면	10.19	2024.03.15.(금)	14:00	계곡면사무소	3 춘천천	강진군 강진읍	2.07	2024.03.13.(수)	10:30	보진마을회관	4 쌍암천	순천시 송주읍	8.81	2024.03.13.(수)	15:00	송주읍 행정복지센터	5 대산천	영광군 영광읍, 법성면	2.71	2024.03.14.(목)	11:00	외동1리 경로당	6 묘량천	영광군 묘량면, 영광읍, 대마면	8.56	2024.03.14.(목)	14:00	묘량면사무소	7 마량천	강진군 마량면	3.65	2024.03.08.(금)	10:30	마량면사무소	구분	공람기간 및 장소	공람기간	2024. 2. 22. ~ 2024. 4. 4.(30일)(공휴일 및 토요일 공람기간 제외)	공람장소	전남도청 자연재난과, 시·군 하천관리부서(읍·면사무소) ※ 관련 서류는 공람장소에 비치	정보통신망	전남도청 홈페이지,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(www.eiaass.go.kr)
하천명				위치	연장 (km)	주민설명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날짜	시간	장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 망월천	영암군 삼호읍, 미암면, 학산면	15.20	2024.03.15.(금)	10:00	학산면 행정복지센터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 계곡천	해남군 계곡면	10.19	2024.03.15.(금)	14:00	계곡면사무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 춘천천	강진군 강진읍	2.07	2024.03.13.(수)	10:30	보진마을회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 쌍암천	순천시 송주읍	8.81	2024.03.13.(수)	15:00	송주읍 행정복지센터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 대산천	영광군 영광읍, 법성면	2.71	2024.03.14.(목)	11:00	외동1리 경로당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6 묘량천	영광군 묘량면, 영광읍, 대마면	8.56	2024.03.14.(목)	14:00	묘량면사무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7 마량천	강진군 마량면	3.65	2024.03.08.(금)	10:30	마량면사무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공람기간 및 장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공람기간	2024. 2. 22. ~ 2024. 4. 4.(30일)(공휴일 및 토요일 공람기간 제외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공람장소	전남도청 자연재난과, 시·군 하천관리부서(읍·면사무소) ※ 관련 서류는 공람장소에 비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정보통신망	전남도청 홈페이지,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(www.eiaass.go.kr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하천명	위치	연장 (km)	주민설명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날짜	시간	장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 망월천	영암군 삼호읍, 미암면, 학산면	15.20	2024.03.15.(금)	10:00	학산면 행정복지센터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 계곡천	해남군 계곡면	10.19	2024.03.15.(금)	14:00	계곡면사무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 춘천천	강진군 강진읍	2.07	2024.03.13.(수)	10:30	보진마을회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 쌍암천	순천시 송주읍	8.81	2024.03.13.(수)	15:00	송주읍 행정복지센터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 대산천	영광군 영광읍, 법성면	2.71	2024.03.14.(목)	11:00	외동1리 경로당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6 묘량천	영광군 묘량면, 영광읍, 대마면	8.56	2024.03.14.(목)	14:00	묘량면사무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7 마량천	강진군 마량면	3.65	2024.03.08.(금)	10:30	마량면사무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공람기간 및 장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공람기간	2024. 2. 22. ~ 2024. 4. 4.(30일)(공휴일 및 토요일 공람기간 제외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공람장소	전남도청 자연재난과, 시·군 하천관리부서(읍·면사무소) ※ 관련 서류는 공람장소에 비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정보통신망	전남도청 홈페이지,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(www.eiaass.go.kr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광주일보(2024. 02. 22.)</p>	<p>동아일보(2024. 02. 22.)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(그림 2.2 - 4) 공람·공고 신문공고



(그림 2.2 - 5) 주민설명회 사진

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

① 사업명	마량천 하천기본계획		
② 사업장 위치	전라남도 강진군 마량면 마량리 280번지 일원		
③ 주민설명회 일시	2024년 03월 08일(금) 10:30	④ 주민설명회 장소	마량면사무소
⑤ 사업시행자	전라남도		
주민설명회 참석자			
번호	성명	주소	서명
	김 O		[서명]
	김 O		[서명]
	김 O		[서명]
	김 O		[서명]
	김 O		[서명]
	김 O		[서명]

(그림 2.2 - 6) 주민설명회 참석자명부(1)

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

① 사업명	마량천 하천기본계획		
② 사업장 위치	전라남도 강진군 마량면 마량리 280번지 일원		
③ 주민설명회 일시	2024년 03월 08일(금) 10:30	④ 주민설명회 장소	마량면사무소
⑤ 사업시행자	전라남도		
주민설명회 참석자			
번호	성명	주소	서명
	이		이
	기		기
	박		박

(그림 2.2 - 7) 주민설명회 참석자명부(2)



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

① 사업명	마량천 하천기본계획		
② 사업장 위치	전라남도 강진군 마량면 마량리 280번지 일원		
③ 주민설명회 일시	2024년 03월 08일(금) 10:30	④ 주민설명회 장소	마량면사무소
⑤ 사업시행자	전라남도		
주민설명회 참석자			
번호	성명	주소	서명
	김		김
	비		비

(그림 2.2 - 8) 주민설명회 참석자명부(3)

2.3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내용

2.3.1 관계기관 의견


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 <p>영산강유역환경청</p> <p>수신 수신자 참조 (경유) 제목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검토의견 보낸[마량천 하천기본계획(변경) 및 하천 재해예방사업]</p> </div> <p>1. 전라남도 자연재난과-3777(2024. 2. 16.)호와 관련됩니다.</p> <p>2. 귀 기관에서 검토 요청한 "마량천 하천기본계획(변경) 및 하천재해예방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에 대한 검토의견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려니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(본안)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3. 아울러, 한국환경연구원에서는 동 사업의 협의 진행 현황 관리 등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붙임 검토의견 1부. 끝.</p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 margin-top: 20px;">  <p>영산강유역환경청장</p> <p>수신자 전라남도지사(자연재난과장), 한국환경연구원장</p> </div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10px;"> <tr> <td>주무관</td> <td>김서민</td> <td>주무관</td> <td>안백현</td> <td>과장</td> <td>박윤구</td> <td>국장</td> <td>전발 2024. 3. 28</td> </tr> <tr> <td>협조자</td> <td colspan="7"></td> </tr> <tr> <td>시행</td> <td>환경평가과-1854</td> <td>(2024. 3. 28.)</td> <td>협수</td> <td>자연재난과-7537</td> <td>(2024. 3. 28.)</td> <td colspan="2"></td> </tr> <tr> <td>우</td> <td>59165</td> <td>광주광역시 계수로 31 영산강유역환경청</td> <td colspan="5"></td> <td>http://yeongsan.go.kr</td> </tr> <tr> <td>전화번호</td> <td>062-410-5264</td> <td>팩스번호</td> <td>061-590-1629</td> <td colspan="2">/ frosted21@ye.go.kr</td> <td colspan="2">/ 비공개</td> </tr> </table>	주무관	김서민	주무관	안백현	과장	박윤구	국장	전발 2024. 3. 28	협조자								시행	환경평가과-1854	(2024. 3. 28.)	협수	자연재난과-7537	(2024. 3. 28.)			우	59165	광주광역시 계수로 31 영산강유역환경청						http://yeongsan.go.kr	전화번호	062-410-5264	팩스번호	061-590-1629	/ frosted21@ye.go.kr		/ 비공개		<p>[붙임]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검토의견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[마량천 하천기본계획(변경) 및 하천재해예방사업]</p> <p>○ 계획내용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하천명</th> <th rowspan="2">계획규모</th> <th rowspan="2">계획년도</th> <th colspan="2">위 치</th> <th rowspan="2">주요 계획내용</th> </tr> <tr> <th>시점</th> <th>종점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마량천</td> <td>3.65km</td> <td>80년</td> <td>전남 강진군 마량면 마량리 280번지선</td> <td>전남 강진군 마량면 신마량조제</td> <td> - 계획홍수량: 55~250m³/s - 계획하폭: 10~104m - 축제 4,149m, 보축 2,083m - 교량: 제가설 10개소, 준지 3개소 - 보닉자궁: 신설 1개소, 제가설 1개소 - 배수시설물: 제가설 23개소, 준지 9개소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○ 협의근거: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9조 및 제12조 「하천법」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</p> <p>○ 계획수립자 / 승인기관 : 전라남도지사 / 전라남도</p> <p>I. 총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동 건은 강진군 마량면 일원의 마량천에 대하여, 하천재해예방사업 추진을 위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추진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에 대한 검토의견임 ○ 하천기본계획은 상위·관련계획과 부합하여야 하며, 하천의 연속성과 자연성을 최대한 유지하는 방향으로 친환경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안 분석 시 지수안정성과 환경보전이 균형을 이루도록 검토·제시 ○ 동 계획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초안 검토의견을 전략환경영향평가(본안)에 충실히 반영·작성하여야 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계획이 변경될 경우, 변경된 내용을 총괄표(시설물계획 별 합계를 포함) 작성 	하천명	계획규모	계획년도	위 치		주요 계획내용	시점	종점	마량천	3.65km	80년	전남 강진군 마량면 마량리 280번지선	전남 강진군 마량면 신마량조제	- 계획홍수량: 55~250m ³ /s - 계획하폭: 10~104m - 축제 4,149m, 보축 2,083m - 교량: 제가설 10개소, 준지 3개소 - 보닉자궁: 신설 1개소, 제가설 1개소 - 배수시설물: 제가설 23개소, 준지 9개소
주무관	김서민	주무관	안백현	과장	박윤구	국장	전발 2024. 3. 28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협조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시행	환경평가과-1854	(2024. 3. 28.)	협수	자연재난과-7537	(2024. 3. 28.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우	59165	광주광역시 계수로 31 영산강유역환경청						http://yeongsan.go.kr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전화번호	062-410-5264	팩스번호	061-590-1629	/ frosted21@ye.go.kr		/ 비공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하천명	계획규모	계획년도	위 치		주요 계획내용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시점	종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마량천	3.65km	80년	전남 강진군 마량면 마량리 280번지선	전남 강진군 마량면 신마량조제	- 계획홍수량: 55~250m ³ /s - 계획하폭: 10~104m - 축제 4,149m, 보축 2,083m - 교량: 제가설 10개소, 준지 3개소 - 보닉자궁: 신설 1개소, 제가설 1개소 - 배수시설물: 제가설 23개소, 준지 9개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영산강유역환경청(1/9)	영산강유역환경청(2/9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II. 항목별 검토의견</p> <p>가. 계획의 적정성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동 하천기본계획과 유역물관리종합계획 및 기수립된 하천기본계획 등 상위·관련계획과의 부합·연계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, 수해·재해이력 등을 종합 검토 후 계획의 적정성 및 필요성을 판단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최근 계획하천에서 수행되었거나 계획 중인 하천정비사업 현황을 조사·제시하고, 급회 개수계획과 중복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과 효과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계획의 타당성을 확보 - 계획하천이 풍수해 위험지구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제시하고, 직·간접적으로 연계된 지구에 대해서는 급회 시설물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·제시 ○ 일괄적·획일적 설계기준(홍수량)을 적용하기보다는 지수적으로 문제가 있는 구간(하천재해위험지구, 상습침수지역 등)을 중심으로 적정규모의 개수계획을 수립·제시하여야 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최근 10년간 침수피해 현황과 원인, 침수범위, 개수율, 제방 보강으로 인해 보호되는 면적 및 시설(가옥, 농경지, 도로 등)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- 개수 전 홍수위에 대한 제방 여유고의 부족이 크지 않거나 현 하폭과 계획하폭의 차이가 미미한 경우 시설계획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 하폭을 유지한 상태에서 제방 여유고를 확보하는 방안 검토·제시 ○ 하천의 연속성을 저해하는 횡적구조물(교량, 보·낙차공)은 존치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대한 철거하고, 존치 또는 제가설·신설하는 경우 타당한 근거와 사유, 설치할 시설물의 형식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가설이 계획된 교량 중 연장이 충분한 경우, 여유고와 경간장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으므로 판단되거나 최근 신설된 교량에 대해서는 가급적 존치하는 방안을 비교 검토·제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철거 계획 수립 시 횡적구조물의 철거는 홍수위 저감효과가 있으므로 철거에 따른 홍수위 저감효과를 검토한 후 이를 계획홍수위에 반영 - 부득이하게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연속성을 향상할 수 있는 공법'을 우선 검토하고, 여도는 해당 하천 내에 서식하는 어류와 수생생물 종의 생태와 습성을 고려하여 시설물로 인한 생태적 단절을 최소화하여야 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보·낙차공(전면 월류형 자연형 여울, 쇄(溜)형상), 생태적기법 어드어울림, 자연형 등) 등 <p>나. 입지의 타당성</p> <p>1) 자연환경의 보전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생물다양성·서식지 보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계획하천 구역 중 자연환경 보전이 고려되어야 할 보전지역' 등을 명기하고 일부구간이 연계되어 있을 경우 이들 하천구역은 수면식생 원형보전, 보·낙차공 철거 등 실현 가능한 보전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·제시하여야 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, 상수원보호구역, 야생동식물 보호지역, 습지보호지역, 문화재보호구역 등 - 하천 내 습지 구간은 가급적 보축으로 계획하고 축제가 불가피할 시 축제 및 보축 등 수단·방법 대안에 대한 장·단점(필요성·환경영향)을 각각 비교하여 분석 후 구체적으로 제시'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축제계획 수립 시와 보축계획 수립 시를 비교·분석 ○ 문헌·현지조사 결과, 사업구역과 주변에서 법정보호종(생, 수달 등) 서식이 확인되었으므로, 사업 시행 시 법정보호종의 서식지 보전 및 서식환경 교란을 최소화하는 적정 보호대책을 수립·제시하여야 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이동성이 높은 법정보호종 수달, 삵의 서식이 확인되었으므로, 서식환경을 보호하고 교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사구간을 300~500m 단위로 구분한 후, 이들 각 구역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일정 기간 별로 공사하는 계획을 검토 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영산강유역환경청(3/9)	영산강유역환경청(4/9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(그림 2.3 - 1) 관계기관 의견(1)

<p>○ 공사 시 발생하는 토사유출로 인한 육수 및 해양생태계 서식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방안을 검토·제시하여야 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해양 동·식물상 조사를 통해 해양보호생물 출현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적정 저감방안을 수립을 검토 - 공사 시 공사장비의 하도 내 진입 방지 및 최소화, 갈수기에 기존 유로 변경 없이 공사를 시행하는 방안 등의 저감방안 수립 검토 - 교량 공사 시 하상 내 부대시설물 설치시 필요한 경우, 가도보다는 가교 설치를 우선 검토 <p>○ 하천의 자연성이 유지되고 있는 구간과 자연호안이 형성된 구간에 대해서는 기존 하천의 호안을 최대한 유지하여 하천의 자연성이 보전·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동 사업은 확폭계획을 포함하고 있는바, 확폭 구간을 도면에 명시하고 확폭에 따른 식생 훼손 면적 산정 및 적정 저감방안을 수립·제시 - 하폭 확장에 따른 축제 구간은 최대한 원경사 자연형 호안으로 계획하고, 자연성을 회복한 호안은 최대한 보전하거나 보축하는 등 식생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 강구 - 과도한 하천의 직선화는 지양하고, 하천 내 여울, 흐름, 편의 반복적 구배 유지를 통하여 다양한 미소서식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 <p>○ 하천에 적용 예정인 호안 공법들은 구간별로 형식을 세부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, 그 형식은 하천 생태계가 개선되고 복원될 수 있는 공법인지 여부를 제시하여야 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식생의 도입을 저해(자연석, 석축 쌓기 등)하고, 홍수 시 훼손되지 않는 기능에 중점을 두어 육수 동물의 서식처를 제공하지 못하는 공법은 지양 	<p>□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 시행 전·후 경관상 변화를 비교할 수 있도록 조망점(원경, 중경, 근경)별 경관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, 사업 시행에 따른 영향 예측에 따른 적정 저감방안을 강구·제시하여야 함 ※ 축제 및 교량 재가설 등 공사 구간 및 내용을 조망점별 사진에 반영·제시 <p>□ 수환경의 보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계획 하천의 특성 및 관련 계획 등을 고려하여 계획 기간 중 수질 목표 기준을 설정하고,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질개선 및 비점오염원 관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·제시하여야 함 • 수질측정 결과, 하류수계 영향 여부, 중권역 수질목표기준 등 - 계획 하천의 수질 목표기준 설정 시 하천의 수질 상태를 조사·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중권역 수질 목표기준 등과의 부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 ○ 계획하천은 해양으로 유입되고 마량상수원보호구역과 마량천 하구습지가 위치하므로 정확한 현황 파악과 공사 시 환경영향 저감방안 계획을 수립·제시하여야 함 - 사업 시행 전·후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하천 하류부 연안의 해양수질을 현지 또는 문헌 자료 조사하여 제시 - 오탐방지막 등 저감방안 수립 시 저감효과를 예측·제시하여 적정성 확보 - 계획하천 인근의 어업권을 조사하여 부유사확산 가능성을 진단하고, 예상되는 부유사 영향권 내에 적정 농도 관리 기준을 수립·제시 - 계획하천 내 위치한 마량천 하구습지의 현황사진, 마량상수원보호구역의 취수 방식, 현장 사진 등 구체적인 현황자료를 제시 ○ 불필요한 준설 및 하상 평탄화 계획은 지양하고 기존 하천 횡단면을 최대한 유지한 상태에서 축제 또는 보축하는 방안을 검토·제시하여야 함
--	--

영산강유역환경청(5/9)



영산강유역환경청(6/9)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호안 상태가 양호하고 현하폭과 계획하폭이 크게 차이나지 않는 구간은 아래 대안을 참고하여 기존 하천 지형을 유지한 상태에서 제방만을 보축하거나 홍수방어벽을 설치하는 방안 검토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하상 준설 이외에 대안이 없는 경우 계획의 필요성 및 홍수저감효과 제시 • 하상 준설 실시와 미설시 대안 비교 <p>○ 하천저질의 오염현황은 해당하천의 수질개선 및 오염방지 대책 수립, 준설토 이용방안 선정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오염도 평가 결과가 '나쁨' 단계 이하인 경우, 오염도 개선을 위한 조치계획을 수립·제시하여야 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하천·호소 퇴적물 오염평가 기준(국립환경과학원 예규 687호, '15.11.16) 참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하천의 저질은 매우 나쁨으로 평가되었으므로 오염원 현황 등을 확인하고 필요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중장기적인 오염관리 대책 수립 - 오염된 토양이 해양에 유입될 경우 해양 수질과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토사의 해양 유입을 최소화하는 저감 대책을 수립 <p>2) 생활환경의 안전성</p> <p>□ 환경기준 부합성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하천정비 시 대기질, 소음·진동에 의한 주변 정온시설의 환경영향을 예측하고 구체적인 저감방안을 수립·제시하여야 함 - 공사 시 대기질 및 소음·진동으로 인한 주변 정온시설 환경영향 예측 결과를 제시하지 않은바, 예측결과와 정온시설의 종류 및 위치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저감대책을 제시 	<p>□ 자원·에너지 순환의 효율성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계획하천에 대한 실시계획 시, 발생 폐기물에 대해 발생단계에서부터 분리·배출, 운반·수집·보관·처리 등 전 과정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처리계획을 수립·제시하여야 함 ○ 사업계획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사업 시행에 따른 공사 시와 운영 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적정 산정하고, 그에 따른 영향 예측 후 적정 저감방안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 ※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(환경부고시 제2023-72호, 2023. 4. 13.), 온실가스 항목 환경영향평가 등 평가지침(환경부, 2015. 12. 9.) 등 참조 <p>3) 사회·경제 환경과의 조화성</p> <p>□ 환경친화적 토지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계획 하천의 현재·장래의 이용·관리 등의 특성을 충실히 반영하여, 공간관리 계획(보전, 복원, 친수지구)을 수립·제시하여야 함 - 위성사진에 공간관리계획 구역을 구분하여 제시하고, 각 구역 설정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(현장 사진·도면 등을 통한 토지이용 현황, 계획 등) 및 장래 관리계획 제시 - 보전지구로 설정된 구간은 인공시설물 설치를 가급적 지양하고, 원형 보전 또는 생태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전계획을 수립 - 친수지구는 환경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정하는 방안 검토
--	--

영산강유역환경청(7/9)

영산강유역환경청(8/9)

(그림 2.3 - 2) 관계기관 의견(2)

<p>III. 기타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전략환경영향평가서(본안) 작성 시 본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조치하고,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[별표1]에 제시한 세부 평가항목에 적합하게 작성·제시하여야 함 ○ 평가서상의 환경현황 조사내용, 환경영향 예측결과 및 저감대책 등의 모든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, 최대한 정량화하여야 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문헌자료(전국자연환경조사 결과, 생태-자연도 등) 및 현장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가장 최신자료를 사용 - 현황조사 및 조사결과는 조사자 인적사항, 현지조사표(동물상 포함) 및 측정기록지 등을 함께 제시(부록에 첨부) - 장래 환경영향 예측 및 예측조건, 예측적용 방법, 예측 시 사용계획, 수치 등은 그 적용 및 산정근거를 명확히 제시 - 관계법령 및 관련 행정계획과 연관되는 내용은 그 근거를 기술하고, 그 내용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사본 등의 근거자료 제시 ○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동 의견과 관계행정기관 및 관계전문가,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를 종합 그 내용 및 반영여부를 요약 제시(라 기안 및 주민의견 수렴 구분)하고, 반영된 의견은 해당 항목에 작성·제시하여야 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동 의견보다 강화된 보전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검토하고, 반영되지 아니한 의견은 그 사유와 함께 대안을 제시 ○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16조에 따라 전략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 행정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소속·직책·성명을 제시하여야 함 끝. 	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 <p>세계로 준비하는 대도인 전남광역시</p> <p>전라남도</p>  </div> <p>수신 전라남도지사(자연재난과장) (경유) 제목 『마량천 하천기본계획(변경) 수립』 전략환경영향평가(본안) 검토의견 회신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도 자연재난과-3777(2024. 2. 16.)오와 관련된 내용입니다. 2. 도에서 추진중인 『마량천 하천기본계획(변경) 수립 및 재해예방사업, 전략환경영향평가(초안)에 대하여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검토 의견을 [붙임]과 같이 회신합니다.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전략환경영향평가(초안) 개요 가. 사업 명: 김진 마량천 하천기본계획(변경) 및 재해예방사업 나. 위 치: 전라남도 마량면 마량리 280번지 일원 다. 면 적: 3.65km 라. 수립기관: 전라남도 마. 승인기관: 전라남도</p> <p>붙임 전략환경영향평가(초안) 검토 의견 1부. 끝.</p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<p>환경 산림 국 장 서명생략</p> </div> <hr/> <p>주무관 최대일 환경정책팀장 김용원 환경정책과장 진광 2024. 3. 5. 발주자 김초자</p> <p>시행 환경정책과-5192 (2024. 3. 5.) 접수 자연재난과-5321 (2024. 3. 5.) 우 68010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해안로 16 / jeonnam.go.kr 전화번호 061-286-7022 팩스번호 061-286-4715 / cd624@korea.kr / 비공개(5)</p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영산강유역환경청(9/9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전라남도청(1/4)</p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강진 마량천 하천기본계획(변경) 및 하천재해예방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검토 의견</p> <p>□ 사업개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위 치 : 강진군 마량면 마량리 280번지 일원 ○ 규 모 : 3.65km ○ 시행기관 : 전라남도 ○ 승인기관 : 전라남도 <p>□ 검토의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본 검토의견은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의 “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관할하는 도지사”와 관련된 도 환경영향평가 담당부서의 의견임. ○ 본 평가서는 하천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·분석을 통해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작성됨. ○ 상위계획 및 환경 관련 계획·정책 등과의 연계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친환경적인 관리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. ○ 본 하천기본계획 수립 구간의 환경보전 및 저감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, 자연환경특성을 최대한 유지하여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여야 함. ○ 계획하천의 동·식물상 보호를 위한 저감대책을 이행하여야 하며, 공사시 법정보호종의 출현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, 포획 및 남획방지, 작업인부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 등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·시행하여야 함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교량, 보, 배수시설물 등은 자연성 유지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, 수생태계를 보전·복원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. ○ 향후 구체적인 개발사업 등 추진 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사 및 강우시 토사 유출 등으로 주변 수계에 직·간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므로 침사지, 가배수로, 오탁방지막 설치 등 효과적인 지감방안을 수립하여 반영하여야 함. - 공사시 기계·장비 등에서 발생하는 유류 등의 유출로 인한 토양·수질 오염사고에 대한 방지대책을 수립하고, 유출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. - 공사 시 작업 인부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등 처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함. - 공사 및 운영 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, 건설폐기물, 임목폐기물, 공사 장비의 폐유 등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함. - 장비의 가동, 작업차량 진·출입, 야적 등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하여 인근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(살수, 세론시설 등)을 설치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. - 대기질과 소음·진동 영향은 기상여건이나 공사상황에 따라 크게 변화할 수 있으므로, 검토서에 제시된 저감방안을 포함하여 적절한 방안을 마련·이행하여야 함. - 계획하천 공사 시 주변 정온시설(10개소)에 대한 소음·진동 생활 소음 목표 기준 등의 초과가 우려되니 소음·진동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며, 시설방음관설 설치 후에도 소음 기준초과가 예상되는 지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저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함. - 공사 시 주변 환경에 추가적인 악영향이나 민원이 발생 될 경우, 별도의 대책 및 민원 해결 방안 등을 신속히 강구·시행하여야 함.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전라남도청(2/4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전라남도청(3/4)</p>

(그림 2.3 - 3) 관계기관 의견(3)

<p>○ 동 평가서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공사시 배출되는 온실가스 산정량 만큼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흡수할 수 있는 탄소중립 방안을 수립 제시하여야 함.</p> <p>○ 본 계획 수립 후 공사가 진행될 경우 환경관련 법규에 따른 모든 인허가는 사전에 이행하고 시행하여야 함.</p> <p>○ 공사 및 준공 후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보전방안 검토과정 등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으로 주변 환경에 추가적인 악영향이나 민원이 발생될 경우, 별도의 대책 및 민원 해결 방안 등을 신속히 강구·시행하여야 함. 끝.</p>	<p>제52회 강진항지축제, 2024. 2.23.(금)-3.3.(일) 대구권 고려항자오지 일원에서 개최됩니다.</p> <p>강진군</p> <p>수신 전라남도지사(자연재난과장) (경유) 마량천 하천기본계획(변경) 및 재해예방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(초안) 검토 의견서 제출</p> <p>전라남도 자연재난과-3777(2024. 2. 16.)호와 관련하여 마량천하천기본계획(변경) 및 재해예방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(초안) 검토 의견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.</p> <p>붙임 검토 의견서 1부. 끝.</p> <p>강진군</p> <p>주무관 박현마 과장 진광 2024. 3. 14. 양민숙 발신자</p> <p>시행 환경과-11773 (2024. 3. 14.) 접수 자연재난과-6180 (2024. 3. 14.) 우 59250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111 / www.gangjin.go.kr 전화번호 061-430-3224 팩스번호 061-430-3229 / yos12@korea.kr / 비공개 개인정보보호 즉 지켜야 할 우리의 약속입니다.</p>
<p>전라남도청(4/4)</p>	<p>강진군청(1/2)</p>

<p>마량천 하천기본계획(변경) 및 재해예방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검토의견</p> <p>□ 검토의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하천의 이·저수적 안정성 등을 고려하되 자연하천 지형을 최대한 보존하고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연친화적인 방법을 강구하여야 함. ○ 사업 시행 시 하천수 오염의 최소화를 위하여, 가급적 우기를 피하여 작업을 시행하고 배수구역 주변에 가물막이 및 물돌리기 등을 시행하여 토사유출 방지해야 함. ○ 공사 시 야생생물의 서식환경을 최대한 보전 및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, 서식환경 훼손이 우려될 경우 이동통로의 확보 및 단계적 공사 계획 수립 등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, 특히 현장조사에서 관련된 법정보호종 산, 수달 등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사업추진으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함. ○ 본 공사 시행 중 근로자 및 장비투입으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, 폐유, 건설폐기물 등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 규정에 의하여 적정하게 처리하여 2차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시설 설치 및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. ○ 공사 시 비산먼지, 소음·진동 등으로 인하여 주거지역 등 인근지역에서 피해가 예상될 경우 이에 대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함. ○ 공사 시 및 운영 시 예측하지 못한 주민의 생활환경 및 재산상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지역주민 등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. ○ 기타 공사 시행 시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사항을 이행하여 수질 및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장 및 주변 환경을 관리하여야 함. <p>□ 기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환경영향평가 검토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하였거나 예측결과의 부정적 등으로 사업지역 또는 주변지역의 자연 및 생활환경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별도의 추가 환경영향 저감 대책(민원 방지 및 민원 해결방안 포함)을 강구·시행하여야 함. 	<p>자문 의견서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자문안건 : 마량천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자문결과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하천명</th> <th>자 문 의 견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마량천</td> <td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전반적으로 보고서의 내용이나 구성이 적절하게 작성된 것으로 평가됩니다. 2. 각종 계획비교에 따른 대안별 비교 결과와 관련 근거가 적절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. 3. 본 보고서에 명시된 대안에 따라 작성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하천 관리 및 홍수피해 저감 등의 장점이 예상되나, 개발에 따른 환경 및 생태학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장방안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. 특히, 마량천의 경우 상수원 및 수산자원보호구역에 위치할 뿐만 아니라 하천과 근접한 지역에 내륙습지와 환경보전해역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 4. 보고서에 부분적으로 오달자가 확인됨 (ex, Page-149, 마지막문단) 5. [제10장 개발기본계획의 적정성]에 제시된 기수립 하천침범기본계획의 흡수량 및 수리수문 결과와 금회 하천기본계획과 비교 및 적정성 검토 결과를 확인할 수 없음. 6. 본 보고서에 활용한 "마량천 하천기본계획"에 수록된 계획년도, 확률관우량, 계획홍수량, 및 계획홍수위 자료도 함께 제시하는 것을 권고.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위와 같이 자문함.</p> <p>2024. 03. 05.</p> <p>자문위원 : 한 희 찬</p>	하천명	자 문 의 견	마량천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전반적으로 보고서의 내용이나 구성이 적절하게 작성된 것으로 평가됩니다. 2. 각종 계획비교에 따른 대안별 비교 결과와 관련 근거가 적절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. 3. 본 보고서에 명시된 대안에 따라 작성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하천 관리 및 홍수피해 저감 등의 장점이 예상되나, 개발에 따른 환경 및 생태학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장방안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. 특히, 마량천의 경우 상수원 및 수산자원보호구역에 위치할 뿐만 아니라 하천과 근접한 지역에 내륙습지와 환경보전해역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 4. 보고서에 부분적으로 오달자가 확인됨 (ex, Page-149, 마지막문단) 5. [제10장 개발기본계획의 적정성]에 제시된 기수립 하천침범기본계획의 흡수량 및 수리수문 결과와 금회 하천기본계획과 비교 및 적정성 검토 결과를 확인할 수 없음. 6. 본 보고서에 활용한 "마량천 하천기본계획"에 수록된 계획년도, 확률관우량, 계획홍수량, 및 계획홍수위 자료도 함께 제시하는 것을 권고.
하천명	자 문 의 견				
마량천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전반적으로 보고서의 내용이나 구성이 적절하게 작성된 것으로 평가됩니다. 2. 각종 계획비교에 따른 대안별 비교 결과와 관련 근거가 적절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. 3. 본 보고서에 명시된 대안에 따라 작성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하천 관리 및 홍수피해 저감 등의 장점이 예상되나, 개발에 따른 환경 및 생태학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장방안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. 특히, 마량천의 경우 상수원 및 수산자원보호구역에 위치할 뿐만 아니라 하천과 근접한 지역에 내륙습지와 환경보전해역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 4. 보고서에 부분적으로 오달자가 확인됨 (ex, Page-149, 마지막문단) 5. [제10장 개발기본계획의 적정성]에 제시된 기수립 하천침범기본계획의 흡수량 및 수리수문 결과와 금회 하천기본계획과 비교 및 적정성 검토 결과를 확인할 수 없음. 6. 본 보고서에 활용한 "마량천 하천기본계획"에 수록된 계획년도, 확률관우량, 계획홍수량, 및 계획홍수위 자료도 함께 제시하는 것을 권고. 				
<p>강진군청(2/2)</p>	<p>조선대학교</p>				

(그림 2.3 - 4) 관계기관 의견(4)

2.3.3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내용

<표 2.3 - 1> 영산강유역환경청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

구 분	검 토 의 견	조 치 계 획	비 고
I.총괄	○ 동 건은 강진군 마량면 일원의 마량천에 대하여, 하천재해예방사업 추진을 위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추진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에 대한 검토의견임	○전략환경영향평가(본안) 작성시 본 검토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사업 시행으로 인해 주변 자연 및 생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음.	
	○ 하천기본계획은 상위·관련계획과 부합하여야 하며, 하천의 연속성과 자연성을 최대한 유지하는 방향으로 친환경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	○하천기본계획은 상위·관련계획과 부합하도록 하여 수립하겠으며, 하천의 연속성과 자연성을 최대한 유지하는 방향으로 친환경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음.	
	- 대안 분석 시 치수안정성과 환경보전이 균형을 이루도록 검토·제시	○대안 분석 시 치수안정성과 환경보전이 균형을 이루도록 검토·제시하겠음.	
	○ 동 계획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초안 검토의견을 전략환경영향평가(본안)에 충실히 반영·작성하여야 함	○동 계획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전략환경영향평가(본안)에 초안 검토의견에 대한 내용을 충실히 반영·작성하겠음.	
	- 계획이 변경될 경우, 변경된 내용을 총괄표로(시설물계획 별 합계를 포함) 작성	○현재 주민설명회, 관계기관협의 등으로 인한 계획변경시 변경 내용을 총괄표로 제시하도록 하겠음.	
II.항목별 검토의견	가. 계획의 적정성		
	○ 동 하천기본계획과 유역물관리종합계획 및 기수립된 하천기본계획 등 상위·관련계획과의 부합·연계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, 수해·재해이력 등을 종합 검토 후 계획의 적정성 및 필요성을 판단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	○하천기본계획 보고서에 상위계획 및 기수립 기본계획 등의 내용을 토대로 상위·관련계획과의 부합·연계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겠으며, 금회 하천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 후 계획의 적정성 및 필요성을 판단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음.	
	- 최근 계획하천에서 수행되었거나 계획 중인 하천정비사업 현황을 조사·제시하고, 금회 개수계획과 중복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과 효과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계획의 타당성을 확보	○현재 기존 취수보 철거되었으며,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재가설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, 금회 기본계획에서 철거로 계획하였음. ○별도의 하천정비사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.	

<표 계속> 영산강유역환경청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

구 분	검 토 의 건	조 치 계 획	비 고
II. 항목별 검토의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계획하천이 풍수해 위험지구포 함되는지 여부를 제시하고, 직·간접적으로 연계된 지구에 대해서는 급회 시설물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·제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검토결과, 풍수해 및 하천재해와 내수재해 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관련내용을 제시하겠음. ○하천재해 해소를 위해 축제 등 개수계획을 수립하였으며, 내수재해방지를 위하여 농어촌공사와 배수펌프장 증설 계획 협의 중에 있음. 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일률적·획일적 설계기준(홍수량)을 적용하기보다는 치수적으로 문제가 있는 구간(하천재해위험지구, 상습침수지역 등)을 중심으로 적정규모의 개수계획을 수립·제시하여야 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홍수량 산정(기초조사, 기본·계획홍수량) 및 개수계획(계획홍수위, 시설물계획 등) 결정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전라남도 자문회의(1차, 2차)를 실시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를 제시토록 하겠음. 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최근 10년간 침수피해 현황과 원인, 침수범위, 개수율, 제방 보강으로 인해 보호되는 면적 및 시설(가옥, 농경지, 도로 등)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추후 치수경제성을 실시하여 빈도별 홍수범람도 등을 작성하여 제시토록 하겠음. 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개수 전 홍수위에 대한 제방 여유고의 부족이 크지 않거나 현 하폭과 계획하폭의 차이가 미미한 경우 시설계획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 하폭을 유지한 상태에서 제방 여유고를 확보하는 방안 검토·제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여유고 부족구간에 확폭계획을 지양하였으며 현하폭 유지 등을 위하여 더돈기 계획을 수립하였음. 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하천의 연속성을 저해하는 횡적구조물(교량, 보·낙차공)은 존치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대한 철거하고, 존치 또는 재가설·신설하는 경우 타당한 근거와 사유, 설치할 시설물의 형식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현재 철거되어 있는 취수보의 경우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재가설하지 않도록 계획하였으며, 제2수문의 경우 수위저감 및 용수 취수 등을 위하여 철거 후 가동보 계획을 수립하였음. 또한, 기존 교량 등은 주민 설명회를 통하여 전부 재가설 및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. 재가설에 대한 능력검토 내용을 토대로 재가설의 적정성을 제시하겠음. 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재가설이 계획된 교량 중 연장이 충분한 경우, 여유고와 경간장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유수소통에 장애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거나 최근 신설된 교량에 대해서는 가급적 존치하는 방안을 비교 검토·제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능력검토상 만족하는 구조물은 존치하였으며, 능력검토 부족 구조물에 대해서만 재가설 계획을 수립하였음. 하지만 최상류에 있는 수로교의 경우 능력검토는 만족하지 못하나, 용수이용, 현황 등을 고려하여 존치토록 계획하였음. 	

<표 계속> 영산강유역환경청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

구 분	검 토 의 건	조 치 계 획	비 고	
II. 항목별 검토의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철거 계획 수립 시 횡적구조물의 철거는 홍수위 저감효과가 있으므로 철거에 따른 홍수위 저감효과를 검토한 후 이를 계획홍수위에 반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제2수문은 현재 취수 목적으로 사용중에 있어, 홍수위 저감을 위하여 수문은 철거하고 취수를 위한 가동보 계획을 수립하였으며, 계획홍수위 산정시 반영하여 계획하였음. 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부득이하게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연속성을 향상할 수 있는 공법*을 우선 검토하고, 어도는 해당 하천 내에 서식하는 어류와 수생생물 종의 생태와 습성을 고려하여 시설물로 인한 생태적 단절을 최소화하여야 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낙차공 재가설시 자연형 여울로 제시하였으며, 가동보 신설시 어도 설치를 제시하도록 하겠음. 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보/낙차공(전면 월류형 자연형 여울, 소(꺾)형성), 생태적기법 어도(여울형, 자연형 등)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낙차공 재가설시 자연형 여울로 제시하였으며, 가동보 신설시 어도 설치를 제시하였음. 		
	나. 입지의 타당성			
	1) 자연환경의 보전			
	□ 생물다양성·서식지 보전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계획하천 구역 중 자연환경 보전이 고려되어야 할 보전지역* 등을 명기하고 일부구간이 연계되어 있을 경우 이들 하천구역은 수변식생 원형보전, 보·낙차공 철거 등 실현 가능한 보전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·제시하여야 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계획하천 구역 중 자연환경 보전이 고려되어야 할 보전지역 등을 보고서에 명기하겠으며, 일부구간이 연계되어 있을 경우 이들 하천구역은 실현 가능한 보전대책을 마련하여 구체적으로 수립·제시토록 하겠음. 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, 상수원보호구역, 야생동식물 보호지역, 습지보호지역, 문화재보호구역 등 	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하천 내 습지 구간은 가급적 보축으로 계획하고 축제가 불가피할 시 축제 및 보축 등 수단·방법 대안에 대한 장·단점(필요성·환경영향)을 각각 비교하여 분석 후 구체적으로 제시*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금회 하천의 하류부는 홍수위 부족구간으로 계획홍수위 대비 시설제방고가 현저히 낮아 부득이하게 축제계획을 수립하였으며, 상류부 여유 부족구간에 대해서는 보축계획을 수립하였음. 홍수위 부족구간에 대하여 호안 설치, 제방고 증고 등이 등을 감안하였을 때 보축계획은 적절하지 않아 축제와 보축에 대한 비교 검토는 실시하지 않음. 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축제계획 수립 시와 보축계획 수립 시를 비교·분석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금회 하천의 하류부는 홍수위 부족구간으로 계획홍수위 대비 시설제방고가 현저히 낮아 부득이하게 축제계획을 수립하였으며, 상류부 여유 부족구간에 대해서는 보축계획을 수립하였음. 홍수위 부족구간에 대하여 호안 설치, 제방고 증고 등이 등을 감안하였을 때 보축계획은 적절하지 않아 축제와 보축에 대한 비교 검토는 실시하지 않음. 			

<표 계속> 영산강유역환경청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

구 분	검 토 의 견	조 치 계 획	비 고
II. 항목별 검토의견	○ 문헌·현지조사 결과, 사업구역과 주변에서 법정보호종(삽, 수달 등) 서식이 확인되었으므로, 사업 시행 시 법정보호종의 서식지 보전 및 서식환경 교란을 최소화하는 적정 보호대책을 수립·제시하여야 함	○사업 시행 시 법정보호종의 서식지 보전 및 서식환경 교란을 최소화하는 적정 보호대책을 수립·제시토록 하겠음.	
	- 이동성이 높은 법정보호종 수달, 삽의 서식이 확인되었으므로, 서식환경을 보호하고 교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사구간을 300~500m 단위로 구분한 후, 이들 각 구역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일정 기간별로 공사하는 계획을 검토	○공사구간을 300~500m 단위로 구분한 후, 이들 각 구역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일정 기간별로 공사하는 계획을 검토한 후 검토(안)을 제시토록 하겠음.	
	○ 공사 시 발생하는 토사유출로 인한 육수 및 해양생태계 서식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방안을 검토·제시하여야 함	○공사 시 발생하는 토사유출로 인한 육수 및 해양생태계 서식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방안을 검토·제시토록 하겠음.	
	- 해양 동·식물상 조사를 통해 해양보호생물 출현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적정 저감방안을 수립을 검토	○해양 동·식물상 조사(문헌)를 통해 해양보호생물 출현 여부를 확인하겠으며 그 결과에 따른 적정 저감방안을 수립을 검토하도록 하겠음.	
	- 공사 시 공사장비의 하도 내 진입 방지 및 최소화, 갈수기에 기존 유로 변경 없이 공사를 시행하는 방안 등의 저감방안 수립 검토	○공사 시 공사장비의 하도 내 진입 방지 및 최소화, 갈수기에 기존 유로 변경 없이 공사를 시행하는 방안 등의 저감방안 수립 검토한 후 검토(안)을 제시토록 하겠음.	
	- 교량 공사 시 하상 내 부대시설물 설치가 필요한 경우, 가도보다는 가교 설치를 우선 검토	○교량 공사 시 하상 내 부대시설물 설치가 필요한 경우, 가도보다는 가교 설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음.	

<표 계속> 영산강유역환경청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

구 분	검 토 의 견	조 치 계 획	비 고
II. 항목별 검토의견	○ 하천의 자연성이 유지되고 있는 구간과 자연호안이 형성된 구간에 대해서는 기존 하천의 호안을 최대한 유지하여 하천의 자연성이 보전·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	○하천의 자연성이 유지되고 있는 구간과 자연호안이 형성된 구간에 대해서는 기존 하천의 호안을 최대한 유지하여 하천의 자연성이 보전·회복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음.	
	- 동 사업은 확폭계획을 포함하고 있는바, 확폭 구간을 도면에 명시하고 확폭에 따른 식생 훼손 면적 산정 및 적정 저감방안을 수립·제시	○계획평면도에 축제, 보축 등 구분이 가능하도록 표기하도록 하겠으며, 확폭 구간을 도면에 명시하고 확폭에 따른 식생 훼손 면적 산정 및 적정 저감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토록 하겠음.	
	- 하폭 확장에 따른 축제 구간은 최대한 완경사 자연형 호안으로 계획하고, 자연성을 회복한 호안은 최대한 보전하거나 보축하는 등 식생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 강구	○제내지와 제외지의 비탈경사는 1:2 경사로 계획하였으며, 수리조건에 맞는 호안타입(식생매트, 호안블럭, 생태호안블럭 등)을 제시하겠음.	
	- 과도한 하천의 직선화는 지양하고, 하천 내 여울, 흐름, 꺾의 반복적 구배 유지를 통하여 다양한 미소서식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	○과도한 하천의 직선화는 지양하고, 하천 내 여울, 흐름, 꺾의 반복적 구배 유지를 통하여 다양한 미소서식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음.	
	○ 하천에 적용 예정인 호안 공법들은 구간별로 형식을 세부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, 그 형식은 하천 생태계가 개선되고 복원될 수 있는 공법인지 여부를 제시하여야 함	○지구별로 구분하여 수리조건에 맞는 호안타입(식생매트, 호안블럭, 생태호안블럭 등)을 제시하도록 하겠음.	
	- 식생의 도입을 저해(자연석, 석축 쌓기 등)하고, 홍수 시 훼손되지 않는 기능에 중점을 두어 육수 동물의 서식처를 제공하지 못하는 공법은 지양	○식생의 도입을 저해(자연석, 석축 쌓기 등)하고, 홍수 시 훼손되지 않는 기능에 중점을 두어 육수 동물의 서식처를 제공하지 못하는 공법은 최대한 지양토록 하겠음.	

<표 계속> 영산강유역환경청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

구 분	검 토 의 견	조 치 계 획	비 고
II. 항목별 검토의견	□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		
	○ 사업 시행 전·후 경관상 변화를 비교할 수 있도록 조망점(원경, 중경, 근경)별 경관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, 사업 시행에 따른 영향 예측에 따른 적정 저감방안을 강구·제시하여야 함	○사업 시행 전·후 경관상 변화를 비교할 수 있도록 조망점(원경, 중경, 근경)별 경관 시뮬레이션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, 사업 시행에 따른 영향 예측에 따른 적정 저감방안을 강구·제시토록 하겠음.	
	※ 축제 및 교량 재가설 등 공사 구간 및 내용을 조망점별 사진에 반영·제시		
	□ 수환경의 보전		
	○ 계획 하천의 특성 및 관련 계획 등*을 고려하여 계획 기간 중 수질 목표 기준을 설정하고,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질개선 및 비점오염원 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·제시하여야 함	○계획 하천의 특성 및 관련 계획 등을 고려하여 계획 기간 중 수질 목표 기준을 설정하도록 하겠으며,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질개선 및 비점오염원 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·제시하겠음.	
	* 수질측정 결과, 하류수계 영향 여부, 중권역 수질목표기준 등		
	- 계획 하천의 수질 목표기준 설정 시 하천의 수질 상태를 조사·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중권역 수질 목표기준 등과의 부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	○계획 하천의 수질 목표기준 설정 시 하천의 수질 상태를 조사·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중권역 수질 목표기준 등과의 부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음.	
	○ 계획하천은 해양으로 유입되고 마량상수원보호구역과 마량천 하구 습지가 위치하므로 정확한 현황 파악과 공사 시 환경영향 저감방안 계획을 수립·제시하여야 함	○계획하천 특성에 따른 정확한 현황 파악 및 공사 시 환경영향 저감방안 계획을 수립·제시하도록 하겠음.	
- 사업 시행 전·후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하천 하류부 연안의 해양수질을 현지 또는 문헌 자료 조사하여 제시	○사업 시행 전·후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하천 하류부 연안의 해양수질을 현지 또는 문헌 자료를 활용하여 제시하겠음.		

<표 계속> 영산강유역환경청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

구 분	검 토 의 견	조 치 계 획	비 고										
II. 항목별 검토의견	- 오락방지막 등 저감방안 수립 시 저감효과를 예측·제시하여 적정성 확보	○오락방지막 등 저감방안 수립 시 저감효과를 제시하여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음.											
	- 계획하천 인근의 어업권을 조사하여 부유사확산 가능성을 진단하고, 예상되는 부유사 영향권 내에 적정 농도 관리 기준을 수립·제시	○계획하천 인근의 어업권을 조사하여 부유사확산 가능성을 진단하고, 예상되는 부유사 영향권 내에 적정 농도 관리 기준을 수립·제시토록 하겠음.											
	- 계획하천 내 위치한 마량천 하구 습지의 현황사진, 마량상수원보호구역의 취수 방식, 현장 사진 등 구체적인 현황자료를 제시	○계획하천 내 위치한 마량천 하구 습지의 현황사진, 마량상수원보호구역의 취수 방식, 현장 사진 등 구체적인 현황자료를 제시토록 하겠음.											
	○ 불필요한 준설 및 하상 평탄화 계획은 지양하고 기존 하천 횡단면을 최대한 유지한 상태에서 축제 또는 보축하는 대안을 검토·제시하여야 함	○금회 준설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으나, 교량 설치구간 등 종단계획상 퇴적이 많은 구간(종단 역전구간)은 퇴적구간 상류부의 추가 퇴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상정리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그 외 지역은 최대한 기존 하천 횡단면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음.											
	- 호안 상태가 양호하고 현하폭과 계획하폭이 크게 차이나지 않는 구간은 아래 대안을 참고하여 기존 하천 지형을 유지한 상태에서 제방만을 보축하거나 홍수방어벽을 설치하는 방안 검토	○금회 여유고 부족구간에 대해서는 보축계획을 수립하여 현 지형을 유지할수 있도록 계획하였음.											
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대안1</th> <th>대안2</th> <th>대안3</th> <th>대안4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계획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대안1	대안2	대안3	대안4	계획						
구분	대안1	대안2	대안3	대안4									
계획													
- 하상 준설 이외에 대안이 없는 경우 계획의 필요성 및 홍수저감 효과* 제시	○금회 하상 준설계획은 수립하지 않음.												
* 하상 준설 실시와 미실시 대안 비교													

<표 계속> 영산강유역환경청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

구 분	검 토 의 견	조 치 계 획	비 고
II.항목별 검토의견	○ 하천저질의 오염현황은 해당하천의 수질개선 및 오염방지 대책 수립, 준설토 이용방안 선정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오염도 평가 결과가 '나쁨' 단계 이하인 경우, 오염도 개선을 위한 조치계획을 수립·제시하여야 함	○하천저질의 오염도 개선을 위한 조치계획을 수립·제시토록 하겠음.	
	* 하천·호소 퇴적물 오염평가 기준 (국립환경과학원 예규 687호, '15.11.16) 참고		
	- 하천의 저질은 매우 나쁨으로 평가되었으므로 오염원 현황 등을 확인하고 필요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중장기적인 오염관리 대책 수립	○마량천의 하천저질 결과를 토대로 전라남도청과 협의하여 중장기적인 오염관리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음.	
	- 오염된 토양이 해양에 유입될 경우 해양 수질과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토사의 해양 유입을 최소화하는 저감 대책을 수립	○계획하천 공사시 토사의 해양 유입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도록 하겠음,	
	2) 생활환경의 안전성		
<input type="checkbox"/> 환경기준 부합성			
	○ 하천정비 시 대기질, 소음·진동에 의한 주변 정온시설의 환경영향을 예측하고 구체적인 저감방안을 수립·제시하여야 함	○하천정비 시 대기질, 소음·진동에 의한 주변 정온시설의 환경영향을 예측하고 구체적인 저감방안을 수립·제시토록 하겠음.	
	- 공사 시 대기질 및 소음·진동으로 인한 주변 정온시설 환경영향 예측결과를 제시하지 않은바, 예측결과와 정온시설의 종류 및 위치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저감대책을 제시	○공사 시 하천정비계획 내용을 토대로 대기질, 소음·진동 영향예측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저감대책을 제시하겠음.	

<표 계속> 영산강유역환경청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

구 분	검 토 의 건	조 치 계 획	비 고
II. 항목별 검토의견	□ 자원·에너지 순환의 효율성		
	○ 계획하천에 대한 실시설계 시, 발생 폐기물에 대해 발생단계에서부터 분리·배출, 운반·수집·보관·처리 등 전 과정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처리계획을 수립·제시하여야 함	○ 계획하천에 대한 실시설계 시, 발생 폐기물에 대해 발생단계에서부터 분리·배출, 운반·수집·보관·처리 등 전 과정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처리계획을 수립·제시하도록 하겠음.	
	○ 사업계획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사업 시행에 따른 공사 시와 운영 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적정 산정하고, 그에 따른 영향 예측 후 적정 저감방안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	○ 사업계획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사업 시행에 따른 공사 시와 운영 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적정 산정하겠으며, 그에 따른 영향 예측 후 적정 저감방안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하겠음.	
	※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(환경부고시 제2023-72호, 2023. 4. 13.), 온실가스 항목 환경영향평가등 평가지침(환경부, 2015. 12. 9.) 등 참조		
	3) 사회·경제 환경과의 조화성		
	□ 환경친화적 토지이용		
	○ 계획 하천의 현재·장래의 이용·관리 등의 특성을 충실히 반영하여, 공간관리 계획(보전, 복원, 친수지구)을 수립·제시하여야 함	○ 계획 하천의 현재·장래의 이용·관리 등의 특성을 충실히 반영하여, 공간관리 계획(보전, 복원, 친수지구)을 수립·제시하도록 하겠음.	
	- 위성사진에 공간관리계획 구역을 구분하여 제시하고, 각 구역 설정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(현장 사진·도면 등을 통한 토지이용 현황, 계획 등) 및 장래 관리계획 제시	○ 공간관리계획을 위성사진 등을 통하여 제시하겠음.	
	- 보전지구로 설정된 구간은 인공 시설물 설치를 가급적 지양하고, 원형보전 또는 생태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전계획을 수립	○ 보전지구로 설정된 구간은 인공 시설물 설치를 가급적 지양하고, 원형보전 또는 생태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전계획을 수립하겠음.	
	- 친수지구는 환경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정하는 방안 검토	○ 친수지구는 환경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정하는 방안 검토하도록 하겠음.	

<표 계속> 영산강유역환경청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

구 분	검 토 의 견	조 치 계 획	비 고
Ⅲ. 기타사항	○ 전략환경영향평가서(본안) 작성 시 본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조치하고,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[별표1]에 제시한 세부 평가항목에 적합하게 작성·제시하여야 함	○전략환경영향평가서(본안) 작성 시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조치하겠으며,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제시한 세부 평가항목의 경우도 적합하게 작성·제시토록 하겠음.	
	○ 평가서상의 환경현황 조사내용, 환경영향 예측결과 및 저감대책 등의 모든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, 최대한 정량화하여야 함	○평가서상의 환경현황 조사내용, 환경영향 예측결과 및 저감대책 등의 모든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·제시하겠으며, 최대한 정량화하여 작성·제시하겠음.	
	- 문헌자료(전국자연환경조사 결과, 생태·자연도 등) 및 현황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가장 최신자료를 사용	○문헌자료 및 현황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가장 최신자료를 사용하도록 하겠음.	
	- 현황조사 및 조사결과는 조사자인적사항, 현지조사표(동물상 포함) 및 측정기록지 등을 함께 제시(부록에 첨부)	○현황조사 및 조사결과는 조사자 인적사항, 현지조사표(동물상 포함) 및 측정기록지 등을 함께 제시하겠음.	
	- 장래 환경영향 예측 및 예측조건, 예측적용 방법, 예측 시 사용계획, 수치 등은 그 적용 및 산정근거를 명확히 제시	○장래 환경영향 예측 및 예측조건, 예측적용 방법, 예측 시 사용계획, 수치 등은 그 적용 및 산정근거를 명확히 제시토록 하겠음.	
	- 관계법령 및 관련 행정계획과 연관되는 내용은 그 근거를 기술하고, 그 내용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사본 등의 근거자료 제시	○관계법령 및 관련 행정계획과 연관되는 내용은 그 근거를 기술하겠으며, 그 내용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사본 등의 근거자료 제시	
	○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동 의견과 관계행정기관 및 관계전문가,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를 종합 그 내용 및 반영여부를 요약 제시(각 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구분) 하고, 반영된 의견은 해당 항목에 작성·제시하여야 함	○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영산강유역환경청 의견과 관계행정기관(전라남도청, 강진군청) 및 관계전문가(조선대학교 교수),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를 종합 그 내용 및 반영여부를 요약하여 제시토록 하겠음.	

<표 계속> 영산강유역환경청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

구 분	검 토 의 견	조 치 계 획	비 고
Ⅲ. 기타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동 의견보다 강화된 보전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검토하고, 반영되지 아니한 의견은 그 사유와 함께 대안을 제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영산강유역환경청 초안검토의견보다 강화된 보전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검토하고, 반영되지 아니한 의견은 그 사유와 함께 대안을 제시토록 하겠음. 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16조에 따라 전략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 행정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소속·직책·성명을 제시하여야 함 끝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16조에 따라 전략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 행정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소속·직책·성명을 제시토록 하겠음. 	

<표 2.3 - 2> 전라남도청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

구 분	검 토 의 건	조 치 계 획	비 고
I.검토의견	○ 본 검토의견은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의 “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관할하는 도지사”와 관련된 道 환경영향평가 담당부서의 의견임.	○전략환경영향평가(본안) 작성시 본 검토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사업 시행으로 인해 주변 자연 및 생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음.	
	○ 본 평가서는 하천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·분석을 통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작성됨.		
	○ 상위계획 및 환경 관련 계획·정책 등과의 연계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친환경적인 관리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.	○상위계획 및 환경 관련 계획·정책 등과의 연계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친환경적인 관리계획을 수립·시행토록 하겠음.	
	○ 본 하천기본계획 수립 구간의 환경보전 및 저감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, 자연환경특성을 최대한 유지하여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여야 함.	○금회 계획이 수립되는 마량천 3.65 km구간의 환경보전 및 저감방안을 제시토록 하겠으며, 자연환경특성을 최대한 유지하여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겠음.	
	○ 계획하천의 동·식물상 보호를 위한 저감대책을 이행하여야 하며, 공사시 법정보호종의 출현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, 포획 및 남획방지, 작업인부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 등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·시행하여야 함.	○현지 및 문헌조사시 발견된 계획하천의 동·식물상 보호를 위한 저감대책을 이행토록 하겠으며, 공사시 법정보호종의 출현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, 포획 및 남획방지, 작업인부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 등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·시행토록 하겠음.	
	○ 교량, 보, 배수시설물 등은 자연성 유지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, 수생태계를 보전·복원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.	○현재 철거되어 있는 취수보의 경우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재가설하지 않도록 계획하였으며, 제2수문의 경우 수위저감 및 용수 취수 등을 위하여 철거 후 가동보 계획을 수립하였음. 또한, 기존 교량 등은 주민 설명회를 통하여 전부 재가설 및 존치(수로교는 능력검토 부족하나 용수이용 및 현황을 고려하여 존치 계획)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. 재가설에 대한 능력검토 내용 토대로 재가설의 적정성을 제시하겠음.	

<표 계속> 전라남도청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

구 분	검 토 의 견	조 치 계 획	비 고
I.검토의견	○ 향후 구체적인 개발사업 등 추진 시		
	- 공사 및 강우시 토사 유출 등으로 주변 수계에 직·간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므로 침사지, 가배수로, 오타방지막 설치 등 효과적인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반영하여야 함.	○공사 및 강우시 토사 유출 등으로 주변 수계에 직·간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므로 침사지, 가배수로, 오타방지막 설치 등 효과적인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반영토록 하겠음.	
	- 공사시 기계·장비 등에서 발생하는 유류 등의 유출로 인한 토양·수질오염사고에 대한 방지대책을 수립하고, 유출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.	○공사시 기계·장비 등에서 발생하는 유류 등의 유출로 인한 토양·수질 오염사고에 대한 방지대책을 수립 하겠으며, 유출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음.	
	- 공사 시 작업 인부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등 처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함.	○공사 시 작업 인부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등 처리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음.	
	- 공사 및 운영 시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, 건설폐기물, 임목폐기물, 공사 장비의 폐유 등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함.	○공사 및 운영 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, 건설폐기물, 임목폐기물, 공사 장비의 폐유 등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토록 하겠음.	
	- 장비의 가동, 작업차량 진·출입, 야적 등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하여 인근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(살수, 세륜시설 등)을 설치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.	○장비의 가동, 작업차량 진·출입, 야적 등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 먼지로 인하여 인근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(살수, 세륜시설 등)을 설치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.	
	- 대기질과 소음·진동 영향은 기상여건이나 공사상황에 따라 크게 변화할 수 있으므로, 검토서에 제시된 저감방안을 포함하여 적절한 방안을 마련·이행하여야 함.	○대기질과 소음·진동 영향은 기상여건이나 공사상황에 따라 크게 변화할 수 있으므로, 검토서에 제시된 저감방안을 포함하여 추가적으로 현실가능한 저감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토록 하겠음.	

<표 계속> 전라남도청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

구 분	검 토 의 견	조 치 계 획	비 고
I.검토의견	- 계획하천 공사 시 주변 정온시설(10개소)에 대한 소음이 생활 소음 목표 기준 등의 초과가 우려되니 소음·진동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며, 가설방음판넬 설치 후에도 소음 기준초과가 예상되는 지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저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함.	○계획하천 공사 시 주변 정온시설에 대한 소음이 생활 소음 목표 기준 등의 초과가 우려되니 소음·진동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수립·시행하겠으며, 가설방음판넬 설치 후에도 소음 기준초과가 예상되는 지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저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음.	
	○ 향후 구체적인 개발사업 등 추진 시		
	- 공사 시 주변 환경에 추가적인 악영향이나 민원이 발생 될 경우, 별도의 대책 및 민원 해결 방안 등을 신속히 강구·시행하여야 함.	○공사 시 주변 환경에 추가적인 악영향이나 민원이 발생 될 경우, 별도의 대책 및 민원 해결 방안 등을 신속히 강구·시행토록 하겠음.	
	○ 동 평가서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공사시 배출되는 온실가스 산정량 만큼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흡수할 수 있는 탄소중립 방안을 수립 제시하여야 함.	○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공사시 배출되는 온실가스 산정량 만큼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흡수할 수 있는 탄소중립 방안을 수립·제시토록 하겠음.	
	○ 본 계획 수립 후 공사가 진행될 경우 환경관련 법규에 따른 모든 인·허가는 사전에 이행하고 시행하여야 함.	○본 계획 수립 후 공사가 진행될 경우 환경관련 법규에 따른 모든 인·허가는 사전에 이행하고 시행하겠음.	
	○ 공사 및 준공 후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보전방안 검토과정 등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으로 주변 환경에 추가적인 악영향이나 민원이 발생 될 경우, 별도의 대책 및 민원 해결 방안 등을 신속히 강구·시행하여야 함. 끝.	○공사 및 준공 후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보전방안 검토과정 등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으로 주변 환경에 추가적인 악영향이나 민원이 발생될 경우, 별도의 대책 및 민원 해결 방안 등을 신속히 강구·시행토록 하겠음.	

<표 2.3 - 3> 강진군청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

구 분	검 토 의 견	조 치 계 획	비 고
I.검토의견	○ 하천의 이·치수적 안정성 등을 고려하되 자연하천 지형을 최대한 보존하고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연친화적인 방법을 강구하여야 함.	○하천의 이·치수적 안정성 등을 고려하되 자연하천 지형을 최대한 보존하고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연친화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재해예방사업이 되도록 하겠음.	
	○ 사업 시행 시 하천수 오염의 최소화를 위하여, 가급적 우기를 피하여 작업을 시행하고 배수구역 주변에 가물막이 및 물돌리기 등을 시행하여 토사유출 방지해야 함.	○사업 시행 시 하천수 오염의 최소화를 위하여, 가급적 우기를 피하여 작업을 시행하고 배수구역 주변에 가물막이 및 물돌리기 등을 시행하여 토사유출 방지를 하겠음.	
	○ 공사 시 야생생물의 서식환경을 최대한 보전 및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, 서식환경 훼손이 우려될 경우 이동통로의 확보 및 단계적 공사 계획 수립 등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, 특히 현장 조사에서 관찰된 법정보호종 삶, 수달 등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사업추진으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함.	○공사 시 야생생물의 서식환경을 최대한 보전 및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, 단계적 공사 계획을 실시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음. ○현장조사에서 관찰된 법정보호종 삶, 수달 등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사업추진으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음.	
	○ 본 공사 시행 중 근로자 및 장비투입으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, 폐유, 건설폐기물 등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 규정에 의하여 적정하게 처리하여 2차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시설 설치 및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	○본 공사 시행 중 근로자 및 장비투입으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, 폐유, 건설폐기물 등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 규정에 의하여 적정하게 처리하여 2차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시설 설치 및 조치를 이행하겠음.	
	○ 공사 시 비산먼지, 소음·진동 등으로 인하여 주거지역 등 인근지역에서 피해가 예상 될 경우 이에 대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함.	○ 공사 시 비산먼지, 소음·진동 등으로 인하여 주거지역 등 인근지역에서 피해가 예상 될 경우 이에 대한 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음.	
	○ 공사 시 및 운영 시 예측하지 못한 주민의 생활환경 및 재산상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지역주민 등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.	○공사 시 및 운영 시 예측하지 못한 주민의 생활환경 및 재산상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지역주민 등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음.	

<표 계속> 강진군청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

구 분	검 토 의 견	조 치 계 획	비 고
I.검토의견	○ 기타 공사 시행 시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사항을 이행하여 수질 및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장 및 주변 환경을 관리하여야 함.	○기타 공사 시행 시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사항을 이행하여 수질 및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장 및 주변 환경을 관리토록 하겠음.	
II.기타	○ 환경영향평가 검토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하였거나 예측결과의 부적정 등으로 사업지역 또는 주변지역의 자연 및 생활환경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별도의 추가 환경영향 저감 대책(민원 방지 및 민원 해결방안 포함)을 강구·시행하여야 함.	○환경영향평가 검토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하였거나 예측결과의 부적정 등으로 사업지역 또는 주변지역의 자연 및 생활환경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별도의 추가 환경영향 저감 대책(민원 방지 및 민원 해결방안 포함)을 강구·시행토록 하겠음.	

<표 2.3 - 4> 한희찬(조선대학교)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

구 분	검 토 의 견	조 치 계 획	비 고
I.검토의견	○ 전반적으로 보고서의 내용이나 구성이 적절하게 작성된 것으로 평가됩니다.	○전략환경영향평가(본안) 작성시 본 검토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사업 시행으로 인해 주변 자연 및 생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음.	
	○ 각종 계획비교에 따른 대안별 비교 결과와 관련 근거가 적절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.		
	○ 본 보고서에 명시된 대안에 따라 작성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하천 관리 및 홍수피해 저감 등의 장점이 예상되나, 개발에 따른 환경 및 생태학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방안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. 특히, 마량천의 경우 상수원 및 수산자원 보호구역에 위치할 뿐만 아니라 하천과 근접한 지역에 내륙습지와 환경보전해역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	○계획하천이 위치한 마량천의 경우 마량상수원보호구역, 완도·도암만 수산자원보호구역, 환경보전해역 및 마량천하구습지 등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관련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친환경적인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재해예방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음.	
	○ 보고서에 부분적으로 오탈자가 확인됨(ex, Page-149, 마지막문단)	-	
	○ [제10장 개발기본계획의 적정성]에 제시된 기수립 하천정비기본계획의 홍수량 및 수리수문 결과와 금회 하천기본계획과 비교 및 적정성검토 결과를 확인할 수 없음.	○기수립 및 금회 홍수량 산정방법 비교 및 홍수량 비교를 제시토록 하겠음.	
	○ 본 보고서에 활용할 “마량천 하천기본계획”에 수록된 계획빈도, 확률강우량, 계획홍수량 및 계획홍수위 자료도 함께 제시하는 것을 권고.	○계획빈도, 확률강우량, 계획홍수량, 계획홍수위자료를 제시토록 하겠음.	

<표 2.3 - 5> 주민설명회 질의내용 및 조치계획

질의자	질의내용	답변내용 및 조치계획	비고
마랑면 주민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수문교 하류쪽으로 염수피해를 방지하고 갈수기때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 및 교량을 설치해 주었으면 함 ○ 상류에 비하여 하류의 교량 수가 적어서 어려움이 있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해당구간은 농어촌공사에서 염류 피해 방지를 위한 취수를 금지하고 있는 구간임. ○ 또한, 해당구간은 기존에 보 및 교량이 미설치되어 있는 구간으로 신규 설치시 홍수위 상승 등 치수 및 환경, 경제성, 자문 및 심의, 관계기관 협의(농어촌공사, 강진시 등) 등을 고려하여 설치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음. 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하천 내 갈대는 제거가 필요함. 갈대로 인해 수위에 영향이 많음,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금회 계획으로 인하여 하상의 갈대를 제거할 계획이며, 향후 갈대 식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에 주기적인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안하겠음. 	
마랑면 주민2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편입예상지역에 축사 등 사유지가 포함되는 것처럼 보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금회 축제 및 보축 등의 계획으로 인하여 제내지 농경지(사유지) 편입은 발생하나, 지장물 저축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하류부 좌안측에 홍수방어벽 설치 계획을 수립하였으며, 중류 및 상류부에 위치하고 있는 축사, 창고 등은 금회 저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였음. 	
마랑면 주민3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보 및 수문 등 검토 후 설명회를 다시 개최하는 것인지?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실시설계 단계에서 필요시 개최하도록 하겠음. 	
마랑면 주민4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1,2잠수교 철거 후 재가설되는 교량의 크기가 큰 트랙터 같은 농기계까지 지나갈 수 있는 크기인가? ○ 현재 교량을 지나 회전할 때 폭이 좁아서 어려움이 많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1,2잠수교 철거 후 기존에 맞게 재가설 계획을 수립하였으며, 교량 폭은 '농어촌도로의 구조·기준에 관한 규칙'에 근거하여 5m 이상으로 하겠음. ○ 또한, 교량 계획시 각각부를 설치하여 차량의 진, 출입에 문제가 없도록 계획하겠음. 	